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0-25호**  
**2020. 4. 3.(금)**

## 차 례

### 고 시(2)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0-36호) ..... 1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고시 제2020-37호) ..... 2

### 공 고(8)

- 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공고 제2020-319호) ..... 4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0-328호) ..... 5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0-329호) ..... 6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0-330호) ..... 7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0-331호) ..... 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모집공고(공고 제2020-338호) ..... 9
- 도로의 통행제한(부분통제) 공고(공고 제2020-341호) ..... 13
- 등록사항정정(면적)대상토지 공고(공고 제2020-347호) ..... 15

### 입법예고(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332호) ..... 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342호) ..... 3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343호) ..... 40

### 행정예고(1)

- 노인 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속도위반) 설치 행정예고(공고 제2020-334호) ..... 52

공 람									
--------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장동 127	산디로15번길 100	2020. 4. 3.	건물신축	산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비래동 121-29	비래동로15번길 58	2020. 4. 3.	건물신축	비래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덕암동 60-11	덕암로125번안길 126	2020. 4. 3.	건물신축	덕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덕암동 60-18	덕암로125번안길 124	2020. 4. 3.	건물신축	덕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덕암동 60-19	덕암로125번안길 122	2020. 4. 3.	건물신축	덕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목상동 193-1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193-1, 194-1번지

나. 면 적 : 635m<sup>2</sup>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목상동 193-1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대표자 성두영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193-1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40일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0. 4. 3.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세대수	비고
635㎡	57.72%	184.15%	최고 18.23m (지상 5층)	다세대주택	19세대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 세대 수(전용면적 기준㎡)											비고
	계	57.63	56.84	58.15	59.32	48.41	53.24	59.05	39.62	35.33	50.06	
임대	19	1	1	1	1	1	1	1	4	4	4	

8.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해당없음

9.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끝.

## 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축산물운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고기간 : 2020년 4월 3일 ~ 2020년 4월 22일

□ 말소예정 대상

영업의 종류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직권말소사유
축산물판매업	우일축산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29번길 32 (중리동)	우○일	사업자등록 폐업

□ 공고사항

- 조치내용: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사항 말소**
- 조치사유: 사업자 등록 폐업확인
- 법적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제6항
- 해당 조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20. 4. 22. (수) 18:00까지
-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에너지경제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모사전송 (팩스 042-608-3831)

□ 말소예정 일자 : 2020. 4. 24.(금)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 에너지경제과(☎ 042-608-69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 대덕유성지사장이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대덕구 대전로	전력관 매설	대화동 16-14번지	175.00×3	아스콘, 소형고압블록, 투수아스콘	55.0	착공일로부터 60일간	58.30 (착공일로부터 60일)	0.80
2	대덕구 대청로	전력관 매설	용호동 55번지	175.00×2, 100.00×1	아스콘	175.0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82.56 (착공일로부터 60일)	65.10

끝.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장이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대덕구 장동로	수탁급수	와동 113-1 1번지	80.00	아스콘	8.0	착공일로부터 25일간	8.00 ( 착공일로부터 25일)	0.64

끝.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장이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대덕구 선비마을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송촌동 550-1번지	150.00	아스콘	872.0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872.00 (착공일로부터 180일)	131.00
2	대덕구 중리서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중리동 398-1번지	100.00	아스콘	870.0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870.00 (착공일로부터 180일)	87.00
3	대덕구 덕암로	노후 상수도관 개량	덕암동 17-3번지	150.00	아스콘	637.0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637.00 (착공일로부터 180일)	96.00
4	대덕구 이현동	노후 상수도관 개량	이현동 356-1번지	150.00	아스콘	483.0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483.00 (착공일로부터 180일)	73.00
5	대덕구 동촌당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송촌동 497-1번지	150.00	아스콘	1,615.0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1,615.00 (착공일로부터 180일)	243.00
6	대덕구 문평동로	노후 상수도관 개량	문평동 95번지	200.00	아스콘	1740.0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1,740.00 (착공일로부터 180일)	346.00

끝.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이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대덕 산업단지	오폐수관로 정비	대덕 산업단지	300.00 ~ 1,450.00	아스콘, 소형고압블록	2,121.1	2020.03. ~ 2022.04.	872.00 (2020.03. ~ 2022.04.)	-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모집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구 예산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참여 구민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모집기간 : 2020. 4. 6.(월) ~ 2020. 4. 16.(목) / 10일간
- 모집인원 : 100명 이내
  -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 동별 2인 이상
  -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총 인원의 1/2이상
  -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 “주민”에 해당하는 아래의 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자
  - 대덕구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
  - 타 지역 주민이라도 추천에 의하여 대덕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자
- 분과위원회별 해당부서 내역

분과명	인원	해당부서
계	100명	26개 부서
행정지원	25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총무과, 교육공동체과(동),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복합문화센터, 의회사무과
사회산업	25	에너지경제과, 기후환경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보건소
도시교통	25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교통과, 도시재생사업단
안전건설	25	안전총괄과, 건설과

## 5. 주요기능

-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집약 활동
- 중점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등
- ※ 예산학교(5~6월 중 1회), 구민위원회(10월 중 3회 이상) 참여 필수

## 6. 위원선정

- 신청자별 예산참여 희망분과 및 지역별 인원 안배로 선정
- 신청인원 미달 시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
- 신청인원 초과 시 신규여부, 지역별, 분과별, 연령별, 성별 등을 고려 선정
- ※ 허위서류 제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7. 제출서식 및 제출방법(접수처)

-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동 지역회의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 제출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대덕구청(기획홍보실) , 대덕구 동 행정복지센터 / 근무시간 내
  - 우편 제출 : 대전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2층 기획홍보실 주민참여예산제 담당자 앞 / 우편 제출 후 ☎ 608-6053 전화 요망
  - FAX 제출 : 기획홍보실, 팩스번호(608-3811) 전송 후, ☎ 608-6053 전화 요망

8. 신청서식은 우리 구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의 (주민참여포털-주민참여 커뮤니티-자료실) 또는 대덕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기획홍보실 (☎ 608-60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341호

## 도로의 통행제한(부분통제) 공고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의 통행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도로의 종류	시도 / 대전로	노선명	대로1류(7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공사차량을 제외한 전차량	구간	대화동 27-7 및 24-6 앞 도로
기간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9월 3일까지		

이유

- 「대화동 대화육교 승강기 설치공사」에 따른 작업 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그 밖의 사항

- 통제방법 : 주행차로 중 일부 부분통제(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 통행방법 : 교통신호수 배치를 통한 우회도로 안내 및 차량 통제
- 시행청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
- 연락처 : 대덕구 건설과(☎042-608-5214), (주)더위즈덤(☎042-716-0151)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위치도 및 현황사진



현황사진	
------	--



## 등록사항정정(면적)대상토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에 따라 아래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고, 정정할 사항이 정리되기 전까지 지적측량을 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대상 : “등록사항정정(면적)대상토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0. 04. 03. ~ 2020. 04. 20.(15일 이상)
3.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통지(등록)내역	비고
			정정 전	정정 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819	구거	6,754	6,652	국 (농림축산식품부)	(80)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면적
	836	도로	793	733			

5.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대덕구청 지적과(지적담당 ☎042-608-5312)으로 문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공급식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공공급식의 지원대상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4.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새로운대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로운대덕추진단(전화 : 042-608-6141, FAX : 042-608-3813, E-mail : sdh177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로운대덕추진단 담당자 서동훈(전화 : 042-608-61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제13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제2호에 따른 농산물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대덕구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란 제2호에 따른 농산물 중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사.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생산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5.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지역농산물이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확산,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유통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대덕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4.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급식 인식확산과 참여확대를 위한 강연, 홍보, 회의, 공동체 활동 지원
7.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8.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3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제2장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급식 관련분야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6.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7.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공공급식 지원

제13조(공공급식의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대덕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 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우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 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구청장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8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④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콜드체인(신선한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저온을 유지하여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배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 ⑤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장: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
- ③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최초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 및 감독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1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및 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문을 신설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요금을 면제함(안 별표 1).

나. 주차요금 경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규정함(안 별표 1).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4.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  
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전화 : 042-608-5293,  
FAX : 042-608-3845, E-mail : dkffkts@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담당자 이한준(전  
화 : 042-608-52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원/1구획당)

구 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구획 10분 기준)	1 일 주차권	정 기 주 차 권(월)	
	최초 10분	10분초과후 매10분 이내			주 간	야 간
1급지	400	300	600	12,000	140,000	100,000
2급지	300	200	400	8,700	104,000	69,000
3급지	150	150	300	6,500	72,000	43,000
4급지	100	100	200	2,400	43,000	26,000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 가. 4월 ~ 10월 08:00 ~ 20:00
  -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1급지 : 해당없음
  - 나. 2급지 : 해당없음
  - 다. 3급지 : 1급지,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 지역 및 준 주거지역
  - 라. 4급지 : 1급지 · 2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 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덕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 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을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주차 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 시간의 한하여 적용한다.
8.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0.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11. 1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제는 노상·노외주차장 이용지역 여건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2.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3.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 사랑카드 제시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9.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반경 200m 이내 상가 이용의 확인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 협약이 있는 경우에만 하며, 협약대상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 제13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를 적용한다. 다만,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2.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여러 종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경감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보건소 직영 치매안심센터 개소 및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현 실정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조례의 근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수행사업을 명시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마.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바.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사.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4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3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석  
 봉동) 대덕구보건소(전화 : 042-608-4481, FAX : 042-608-3851, E-  
 Mail: ruobi@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전화: 042-608-44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매안심마을”이란 주민스스로 치매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진 마을로,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치매가 있어도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이웃의 관심과 돌봄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4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전문가의 자문, 유관 기관·단체의 협력 및 연계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임직원, 치매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사업의 자문 및 공동 진행,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민간기관 대표, 공공기관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사업 종료 시점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치매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와 관련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4. 30.>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8. 6. 12.]

[시행일 : 2018. 12. 13.] 제17조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6. 12.>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치매정책사업안내]

##### □ 지역사회협의체

① 기능 :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치매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관 기관·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발굴, 다양한 자원간 연계·협력

②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횟수 : 연2회 이상(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치매안심마을 운영 가이드북]

□ 체제구축 -기억울타리(치매안심마을)운영위원회 구성

① 목적 : 해당 지역(동) 치매 전문가, 유관 기관·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치매 친화 마을을 조성 할 수 있는 기억울타리(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운영

②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 총괄.

③ 기능 : 사업의 자문 및 공동 진행,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④ 임기 : 1차년도 기억울타리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설정

⑤ 운영 : 정기회의(연 2회), 임시회의(필요 시) 개최

⑥ 수당 : 출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 건 소	
담 당 자	김 정 례
연 락 처	(042) 608 - 4481

## 노인 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속도위반) 설치 행정예고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행정예고 내용

- 가. 사업명 : 2020년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 나. 사업규모 : 무인교통단속장비 1개 지점(1대)
- 다. 설치목적 :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운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라. 설치예정 장소

번호	설치장소	설치대수	비고
1	오정동 311-6번지 일원	1대(왕복2차로)	과속

- 마. 주관부서 : 대덕구 교통과(주차시설팀) (☎042-608-5292)

##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3. 공고방법 : 대덕구 홈페이지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년 4월 3일 ~ 2020년 4월 24까지(21일간)

## 5. 의견제출 안내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0년 4월 일까지 아래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대덕구 교통과(주차시설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다. 문 의 처 : 대덕구 교통과(주차시설팀) ☎ 042-608-5292

라. 제출기관 : 대덕구 교통과(주차시설팀)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 전 화 : 042-608-5292

- 팩 스 : 042-608-3845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진

**[붙임2]**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고내용 <b>노인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b>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노인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